

제4장 이용계약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급의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수급 조치 후 같은 절차에 따른다.
- ②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재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시 인증 유효기간으로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 1)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2)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3) 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4)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외출시 동행 등)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1등급 2,069,900원(전년대비 인상을 9.81%), 2등급 1,869,600원(10.63%), 3등급 1,455,800원(2.72%), 4등급 1,341,800원(2.73%), 5등급 1,151,600원(2.72%), 인지지원등급 643,700원(3.06%)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 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다.

나)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다.

라) 수급자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	인자지원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증가액	184,900	179,600	38,600	35,600	30,500	19,100

변경사유>

-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2024년 1월 1일부로 수가 인상 (제도변경에 따른 변경)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급여제공시간	금 액 (원)	
	변경 전	변경 후
30분 이상	16,190	16,630
60분 이상	23,480	24,120
90분 이상	31,650	32,510
120분 이상	40,280	41,380
150분 이상	46,970	48,250
180분 이상	52,880	54,320
210분 이상	58,930	60,530
240분 이상	65,000	66,770

- 마) 월 이용료 납입 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수급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기관이 이용료 인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보호자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무료]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40% 감경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0%감경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③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③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 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②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③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히할 경우
- ④ 건물, 부대기관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 ⑤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 ⑥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⑦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경우,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만,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라)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변경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9조 (서비스내용)

- ①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옷갈아입기, 세면, 구강청결, 몸단장 도움 등), 몸 씻기 도움, 식사 도움(영양관리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보행, 보장도구 사용 등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프로그램, 감각활동 프로그램 등
인지관리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
기타	그 외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센터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입금한다.
-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